

# 교원 산업체 연구학기에 관한 규정

- 제 정 : 2011. 9. 1.
- 개 정 : 2012. 6. 29.
- 개 정 : 2014. 1. 21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의 연구력 향상과 학문 및 산업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교원 산업체 연구학기의 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“산업체 연구학기”라 함은 본교에 일정기간 근속한 교원이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연구력 향상과 학문 및 산업체 발전에 공헌하도록 직무 또는 복무 의무가 면제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.

## 제3조 - 삭 제 -

**제4조(신청자격)** ① 연구학기 신청 자격은 본교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후 연구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 또는 직전 연구학기를 마치고 복귀한 후 연구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6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이어야 한다.

② 교원으로서 주요보직에 임명된 경우 보직기간 중에도 연구학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연구학기기간은 보직임명기간 이후로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연구학기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
**제5조(휴직, 파견, 연수 등과의 관계)** 통산 3개월 이상의 휴직, 파견, 연수를 하였거나, 교원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임용제한이 있었던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지 않고, 그 기간 또는 임용제한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시 기산한다.

**제6조(연구학기 기간 종료)** 연구학기 중인 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기에 복귀한 경우에도 당해 연구학기 기간을 모두 종료한 것으로 본다.

**제7조(신청 및 선정절차)** ① 연구학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교원은 연구학기 개시 6개월 전까지 소정의 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.

② 총장은 연구학기 개시 3개월 전까지 승인여부를 통보한다.

③ 연구학기 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.

④ 연구학기 교수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.

1. 연구학기 부여 회수
2. 최근 3년간 교수업적 실적

4-1-7 교원 산업체 연구학기에 관한 규정

3. 최초 임용일자

**제8조(연구학기 교원수 제한)** 연구학기 교원의 수는 해당 학과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.

1. 연구학기 교원의 수는 매학기 전체 전임교원의 20분의 1 이하로 한다.
2.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학과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.

**제9조(연구학기 교원의 처우)** ① 연구학기 교원에 대하여는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고 직무 또는 복무 의무가 면제된다.

② 연구학기 기간 중이라도 교원 및 일반직원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봉급, 상여금,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한다.

③ 연구학기 기간 중 강의료, 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.

④ 연구학기 기간 중이라도 교수회의 출석, 의견진술 및 의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
**제10조(연구학기 교원의 의무)** 연구학기 교원은 연구학기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복귀신고서를 제출하고 복귀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(학술논문 및 저서, 산학협력 결과물 등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